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처리 소홀

관계기관 울동초등학교

내 용

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0조, 「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 제8조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출석인정결석 학생의 인정 사유에 맞게 증빙자료를 갖추어 출석인정처리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울동초등학교는 2020학년도 출석인정결석 학생의 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중 총 4건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출석인정결석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조치할 사항]

- ① 울동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5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부적정

관계기관 울동초등학교

내 용

「초중등교육법」 제31조의2(결격사유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 2(회의소집),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회의소집 등)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,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관련법 제59조의3(회의록 작성 및 공개), 관련조례 15조에 따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울동초등학교에서는 2021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시 아래의 [표]과 같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안전송부 15회 지연, 홈페이지 사전공개 미실시 16건, 회의록 공개기한 13회 지연 등 학교운영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.

[표]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

학년도	소집구분	안전 통보일	회의 개최일	회의록 공개시점	7일전 통보	회의전 홈페이지 공개	회의록 공개 지연	비고
2020	제7회 임시회	2020.09.05	2020.9.15.	2020.11.26	O	X	지연	
	제8회 임시회	2020.10.07	2020.10.13.	2020.11.26	X	X	지연	
	제9회 임시회	2020.10.29	2020.10.29.	2020.11.26	X	X	지연	긴급
	제10회 임시회	2020.11.17	2020.11.24.	2020.11.26	O	X	-	
	제11회 임시회	2020.12.23	2020.12.29.	2021.1.15	X	X	지연	긴급
	제12회 임시회	2021.1.20	2021.1.26.	2021.3.11	X	X	지연	
	제13회 임시회	2021.2.18	2021.2.23.	2021.3.11	X	X	지연	

학년도	소집구분	안전 통보일	회의 개최일	회의록 공개시점	7일전 통보	회의전 홈페이지 공개	회의록 공개 지연	비고
2021	제1회 임시회	2021.4.5	2021.4.9	2021.4.22	X	O	지연	
	제2회 임시회	2021.4.6	2021.4.9	2021.4.22	X	O	지연	
	제3회 임시회	2021.7.1	2021.7.8.	2021.7.21	O	X	지연	
	제4회 임시회	2021.8.19	2021.8.23.	2021.8.30	X	X		
	제5회 임시회	2021.9.30	2021.10.6.	2021.10.20.	X	X	지연	
	제6회 임시회	2021.10.21	2021.10.27.	2022.1.4	X	X	지연	
	제7회 임시회	2021.12.16	2021.12.23.	2022.1.4	X	X	지연	
	제8회 임시회	2022.2.14	2022.2.16	2022.3.11	X	X	지연	
2022	제1회 임시회	2022.4.7	2022.4.11	2022.4.14	X	X	-	
	제2회 임시회	2022.4.7	2022.4.11	2022.4.14	X	X	-	
	제3회 임시회	2022.5.20	2022.5.25	2022.5.31	X	X	-	

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울동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1명에게 ‘주의’ 처분 요구합니다.